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이 병 찬 의원의 1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3. 안건요지 : 별첨참조
4. 검토의견 : 별첨참조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 1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도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1996. 10. 30 이병찬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 10. 30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 안 이 유

- 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 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중 “아울러”삭제  
(안 제20조 제2항)

나. 긴급한 의안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개정.  
(안 제20조 제3항)

다. 의안의 상정시기를 정함. (안 제57조의 2 )

- 의안의 상정은 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긴급한 의안의 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 3. 참 고 자 료

가. 국 회 법 : 따로 붙임

나. 대전광역시 법제 사무처리 규정 : 따로 붙임

#### 4. 검토 의견

- 개정코자하는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중 지연제출되는 의안이 많이 발생, 검토 기일의 촉박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됨.
  
- 따라서 긴급한 의안을 상정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이의 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정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됨.